

행정기관명

수신자
(경유)

제 목 부동산·공장재단·광업재단 분할(구분·합병·변경) 대위등기 촉탁

아래의 부동산(공장재단, 광업재단)에 대한 분할(구분·합병·변경) 대위등기를 촉탁합니다(근거: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제32조 및 「국세징수법」 제45조제3항).

부동산 (공장재단, 광업재단)의 표시			
등기원인과 일자		년 월 일 분할(구분·합병·변경)	
등기의 목적		토지 분할(구분·합병·변경)등기	
등기 명의인	성명		
	등록번호		
	주소		
대위 원인		년 월 일	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
등록면허세		금	원정(분의)

끝.

발신명의 직인

접수	년 월 일	접수		조사	
	제 호	기 입		대조확인	

이 촉탁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○○○과 담당자 ○○○(전화 :)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 서명

결재권자 직위(직급) 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명-연도별 일련번호(시행일자) 접수

처리과명-연도별 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 도로명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()

팩스번호()

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/ 공개 구분

공지사항

1. 축탁인 제출서류

가. 도면(건물)

나. 저당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

다. 압류조서등본 통

라. 축탁서 부분 통

2.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: 토지대장 등본(토지) 또는 건축물 대장 등본(건물) 1부